



Rev. MICHAEL KO, Senior Pastor
담임목사 고성민

263-10 Union Turnpike Glen Oaks, NY 11004 Tel. 718-343-1593 www.nypillar.org

뉴욕기둥교회 규약(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절 교회

제 1 조 (명칭 및 대표자)

- ① 뉴욕기둥교회는 1998년 2월 15일 “뉴욕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고, 2020년 2월 15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뉴욕기둥교회(NY Pillar Church)”로 개명하였다.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 ② 본 교회의 대표자는 2019년 7월 7일 담임목사로 부임한 ‘고성민’이다.

제 2 조 (소재지)

본 교회는 <New York> 안에 예배 처소 및 행정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소속)

- ① 본 교회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교회’이다. 단, EM(English Ministry)은 ‘NY PILLAR’ 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KMC)-미주자치연회>에 소속하였다.
- ② 본 교회는 가입 및 소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예, 부담금)를 부담하고 가입된 교단에 선교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속된 교단의 규정(이는 ‘헌법’ 또는 ‘교리와 장정’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따르고 본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조직과 행정은 ‘뉴욕기둥교회 규약(정관)’을 따라 시행한다.

<본 교회가 교단에 소속한다 하더라도 다음 제4조(목적)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위배되는 ‘교리/예배모범/정치/권징조례’를 가질 경우와 본 교회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변경하거나 독립교회로 전환한다.>

- ③ 본 교회에서 구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KMC)에 가입한 EM 교회(NY PILLAR)도 본 교회 규약(정관)에 따

라 운영되고 기독교대한감리회(KMC)가 가진 규정(교리와 장정)은 본 교회에 규약(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④ 본 교회 규약(정관) 규정과 EM교회(NY PILLAR)가 가입한 기독교대한감리회(KMC)의 교리와 장정이 상충할 경우 본 교회 규약(정관)이 우선한다.

제 4 조 (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 ①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실행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는다.
- ②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 ③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신 삶, 베푸신 기적,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권능과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 ④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존귀함, 전적 타락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의인/중생)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
- 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중생시키시며, 내주하시며, 성화케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며,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다.
- ⑥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영생) 또는 영원한 죽음의 부활(영벌)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 ⑦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됨(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믿는다.

제 5 조 (사업) 본 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 ① 전도, 지교회 설립, 교역자 파송, 선교사 파송, 선교지 관리 및 보조 ... 등 선교 사업
- ② 노인복지사업(복지관, 양로원) ... 등 사회 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 ③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 ④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 ⑤ 기타 본 교회가 목적하는 일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제 2 장 교인

제 1 절 교인

제 6 조 (교인)

본 교회의 일반교인은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 당회원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입인

원입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

2. 세례인

세례인은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① 영아 세례인

영아 세례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1세에서 만 3세까지로 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문답을 풀해야 한다. 영아 세례인은 18세가 되면 담임목사의 집례로 입교식에 참여해야 한다.

② 유아 세례인

유아 세례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만 4세에서 만 6세까지로 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문답을 풀해야 한다. 유아 세례인은 18세가 되면 담임목사의 집례로 입교식에 참여해야 한다.

③ 아동 세례인

아동 세례는 본인의 의사표현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만 7세에서 만 12세 까지로 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문답을 풀해야 한다. 아동세례인은 18세가 되면 담임목사의 집례로 입교식에 참여해야 한다.

④ 청소년 세례인

청소년 세례는 만 13세에서 만 17세 까지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례를 주되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문답을 풀해야 한다. 청소년 세례인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입교인이 된다.

⑤ 성인 세례인

성인 세례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례를 주되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문답을 풀해야 한다. 성인 세례인은 세례식과 입교식을 겸하여 한다.

3.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으로 담임목사가 필요한 절차와 예문에 따라 입교시킨 이를 말한다.

① 영아 세례인, 유아 세례인, 아동 세례인, 청소년 세례인으로 18세가 되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입교를 마친 이를 말한다.

② 18세 이상 성인 세례인은 세례식과 입교식을 겸하여 한다.

③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하여 온 이도 위의 규정에 따른다.

4. 당회원

당회 전에 모이는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입교인 중 교인의 의무(제 7조(교인의 의무) 참조)를 충실히 이행하는 이를 확인하여 '당회원 명부'에 기재하여 당회에 상정된 이들을 당회원이라고 한다. <제 80조 (당회 구성원) 참조>

제 7 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 ②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한다.
- ③ 예배, 기도회, 구역예배(속회), 교회학교, 부흥회, 성경공부, 영성훈련 ... 등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단, 뉴욕기독교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정규예배와 기도회 이외에 '기획위원회'가 허락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는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제 66 조 기획위원회 직무 참조)>
- ④ 교회에 십일조와 절기(신년,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등 헌금할 의무를 가지며, 교회가 시행하는 일(교회사업)에도 동참하여 헌금한다. (헌금은 교회재무부에서 처리하여 주보에 이름이 공개된 후에는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무명으로 드린 것도 주보에 내역과 금액이 공개된 후에는 실명으로 드린 것과 동일하게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 ⑤ '선교회(전도회)' 또는 '부', '팀'에 소속하여 선교 및 봉사활동을 한다.
- ⑥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골 3:17)하여 교회와 세상에 덕을 끼쳐야 하며 교회의 임원 등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 ⑦ 교회규약(정관)을 지킨다.

제 8 조 (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 ② 자신의 직분과 연령 등에 맞는 모임 또는 봉사 부서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등록한지 1년이 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인된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어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임원을 선출 할 때는 교회규약(정관)에 따라 피선거권도 갖는다. <제 80조 (당회의 구성원) 참조>

제 9 조 (교인의 권리중지 및 퇴회/제적)

- ① 무고히 6개월 이상 제8조 제3항과 제4항의 교인의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 이는 교인의 권리가 정지되며 '권리가 정지된 교인, 별세, 타교회 등록, 이사 후 불출석 교인'은 기획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당회에 넘겨 당회의 결의를 거쳐 퇴회/제명할 수 있다.
- ② 기획위원회는 아래의 범과에 해당되는 이를 확인했을 경우 교인의 권리를 즉시 중지시키고 당회에서 제명/퇴회 처리하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가. 부적절한 결혼 또는 동성애(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를 하거나 동성애자들의 활동에 동조(참석, 후원) 하는 이

나.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는 이

다. 교회의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였을 때

라. 계교로서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하였을 때

- 마.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 사.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소셜 미디어, 문자, 인터넷 등에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아.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자. 교회가 소집하는 기획위원회, 임원회, 구역회, 당회, 등의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위의 범과에 해당되고 교회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여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이는 확인 즉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당회의 결의로 퇴회/제명할 수 있다.

③본 교회 교인의 퇴회/제적은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 10 조 (임원)

본 교회의 임원은 담임목사, 부담임목사(교회소속 기관 또는 특별부서에서 일하는 목사 포함),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70세까지이다. 목사와 장로는 70세가 되면 기획위원회에서 은퇴를 확인하고 당회에서 원로 됨을 공지한다. 단, 65세가 넘었거나 30년 이상 목회한 목사와 65세가 넘은 장로는 명예(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연령과 무관하게 본인이 '사직'을 할 경우 필요한 행정 처리를 하고 교회에서는 원로로 예우한다. 기타 임원은 1년 직으로 연임이 가하나 60세 이후에는 기획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당회의 결의에 의해 명예(자원) 은퇴할 수 있다. 명예(자원)은퇴한 이들은 은퇴 후에도 은퇴할 때의 직분으로 호칭은 하나 임원실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8 조 (장로의 사직), 제 29 조 (장로의 은퇴) 참조>

제 2 절 집사

제 12 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 되고 교회 등록하고 출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60세 미만인 자(미혼인 경우 30세 이상 된 이, 60세 이상 된 이는 명예/원로집사로 세울 수 있다)
- ② 예배출석과 기도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이
- ③ 속회, 각 선교회, 찬양대, 교사, 교회운영봉사기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봉사하는 이
- ④ 십일조, 감사생활을 하는 이로 교회확장과 건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
- ⑤ 외인들에게서도 선하다는 평을 듣는 이
- ⑥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 ⑦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
- ⑧ 기획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⑨ 교회에서 제정한 집사고시에 합격한 이

- 집사란 교회조직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범사에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이라야 한다.

제 13 조 (집사의 선출) 집사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집사는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선출하여 1년간 시무케 한다. 단, 교인의 의무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는 기획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당회에서 연임을 의결하고 계속 시무케 한다.

제 14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일반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교회의 부(팀), 속회, 선교회, 교회학교, 찬양대 ... 등 봉사하는 모임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③ 시무집사는 자신이 수행한 직무와 교인으로서의 의무생활에 대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 3 절 권사

제 15 조 (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② 60세 이상 된 권사와 질병/출장/여행/선교 ... 등 특별한 이유로 권사의 직무를 감당키 어려운 권사는 기획위원회에서 확인하여 당회의 결의에 의해 명예(자원)은퇴하게 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16 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령 40세 이상 되고 60세 미만 된 이로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로 시무한 이(60세 이상 된 이는 명예/원로 권사로 세울 수 있다. 단, 타교회에서 집사로 2년 이상 시무하고 본 교회에 등록하여 3년 이상 집사로 성실하게 봉사한 이는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로 시무한 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② 타 교파에서 권사를 받고 이명하여 온지 1년이 넘은 이로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이는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권사로 시무케 한다.

③ 온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출석과 기도생활, 성경공부 ... 등에 본이 되는 이(출가 및 해외 유학 또는 취업 ... 등 특별한 경우 제외)

④ 교회 봉사에 본이 되어 속회, 각 선교회, 교회학교, 찬양대, 교회운영 봉사기관 등에 속하여 봉사하는 이

⑤ 섬김과 헌금 생활에 본이 되는 이

⑥ 외인들에게도 선하다는 평을 듣는 이

⑦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그러므로 이미 권사로 임명받아 일하거나, 권사로 추천되더라도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는 권사 임명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⑧ 기획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⑨ 교회에서 제정한 권사 고시에 합격한 이

- 권사는 교회의 중요한 일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범사에 모범적이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금생활에도 본이 되어 성도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17 조 (권사의 선출과 임명)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의 자격을 갖춘 집사 중에서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1년간 시무케 한다. 단, 교인의 의무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권사는 기획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당회에서 연임을 의결하고 계속 시무케 한다.

제 18 조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속회, 교회학교, 기도회 ... 등을 인도한다.
- ② 소속된 부(팀), 선교회, 속회 등에서 봉사하며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인준하고 담임목사가 임명하는 <전임사역 권사>는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교구 담당 교역자를 도와 심방, 기도회 인도 ... 등을 한다.
- ④ 시무권사는 자신이 수행한 직무와 교인으로서의 의무생활에 대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 4 절 장로

제 19 조 (장로의 정수)

장로는 가급적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비율의 최대의 수를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20 조 (장로의 자격 및 선출) 장로의 자격 및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45세 이상 되고 65세 미만 된 이로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성실하게 권사로 시무한 이
- ② 가족 모두 본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하는 이(출가 및 해외 유학 또는 취업 ... 등 특별한 경우 제외)
- ③ 예배 출석 및 기도생활, 성경공부 ... 등에 본이 되는 이
- ④ 교회 봉사에 본이 되어 각부서 활동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이 (선교회 및 부(팀) 임원 / 교회학교 교사 및 임원 / 찬양대원 및 임원 / 속회 인도 등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이)
- ⑤ 각종 섬김과 헌금생활에 본이 되는 이
- ⑥ 외인들에게도 선하다는 평을 듣는 이
- ⑦ 범사에 긍정적이며 담임목사의 목회이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이
- ⑧ 기획위원회 결의로 당회에 천거되어 당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이

장로는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하므로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본 교회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화목한 가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로는 시무 중에 교회 재정 유지에 힘쓸 만한 안정된 직업 또는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도 갖

추어야 한다.

제 21 조 (장로안수)

장로안수는 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담임목사의 주관으로 자체 시행한다. 단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한 교단 지방회 절차를 따를 수도 있다.

제 22 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를 도와 예배, 성례, 기타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 ②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 ③ 교역자를 도와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낙심자 권면, 환자 심방 ... 등)
- ④ 교회의 안정된 재정유지를 위해 힘쓰고 헌금생활에도 본이 된다.
- ⑤ 담임목사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목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⑥ 당회, 기획위원회, 임원회, 구역회 회원이 되며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평신도 대표로 선출되어 지역/지방/전국 등의 회의 참석 및 연합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⑦ 자신이 수행한 직무와 교인으로서의 의무생활에 대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 23 조 (이명하여 오는 장로)

- ① 이명하여 오는 장로가 본 교회 규약(정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이명 동의 결의 후 당회를 거쳐 장로로 받는다. 단, 1년은 '협동장로'로 있게 하고, 1년 후에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시무장로'로 일하게 한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장로는 가급적 '협동장로'로, 65세 이상 된 장로와 이미 은퇴하고 온 원로장로는 기획위원회에서 이명동의 결의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원로장로'로 받고 예우한다.
- ② 협동장로는 기획위원회, 구역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 24 조 (명예장로)

- ① 60세 이상 된 권사 중에 '장로의 자격'에 해당되는 이를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세울 수 있다. (명예장로는 임직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65세 되는 해까지 은퇴하며 은퇴 후에는 원로장로로 예우한다. 65세가 넘은 이를 명예장로로 세울 경우에는 임직 후 1년 뒤에 은퇴하게 하고 원로장로로 예우한다.)
- ② 명예장로는 기획위원회, 구역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 25 조 (장로의 안식)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장로와 3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장로의 안식 청원이 있거나 안식을 시켜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안식하게 한다. 안식중인 장로는 '안식장로'라 칭하고 시무장로에서 제외된다. 안식중인 장로가 복직을 청원하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복직하게 한다. 단, 안식은 1년씩 2년까지 할 수 있고 2년이 넘는 안식이 될 경우는 휴직 처리 한다.

제 26 조 (장로의 휴직)

건강/출장 ... 등 개인 사유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장기여행/선교 ... 등의 사유로 시무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장로의 청원이 있거나 휴직을 시켜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휴직하게 한다. 휴직한 장로는 '휴직장로'라 칭하고 시무장로에서 제외된다. 휴직한 장로가 복직을 청원하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복직하게 한다. 단 휴직한 장로가 1년이 지나도록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 은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은퇴 절차를 밟고 원로 장로로 칭한다.

제 27 조 (안식, 휴직장로의 관리)

안식, 휴직한 장로는 계속 장로로 호칭하되 시무장로에서 제외한다.

제 28 조 (장로의 사직)

시무중인 장로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 청원서를 낼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사직하게 하고 행정 처리하여 원로로 예우한다.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사직'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교단 소속 시무장로에서 제외 되게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제 29조 (장로의 은퇴) 참조>

제 29 조 (장로의 은퇴)

장로는 70세가 된 후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은퇴를 확인하고 당회에서 원로장로로 공지한다.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속교단 절차를 밟는다. 단, 65세가 된 장로는 명예(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연령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본인이 '사직'을 할 경우 필요한 행정 처리를 하고 교회에서는 원로로 예우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제 28 조 (장로의 사직) 참조>

제 30 조 (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 칭하며 당회, 임원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 3 장 사역자

제 1 절 심방전도사

제 31 조 (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 ②③항의 자격을 보유한 30세 이상 된 이
- ② 신학대학 4년 졸업 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한 이
- ③ 신학원 3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이

제 32 조 (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인준하고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심방전도사의 자격'을 갖춘 이로서 '심방전도사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의 임면도 동일하다.)

제 33 조 (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 ② 당회, 임원회,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회원이 된다.
- ③ 당회에 자신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2 절 교육전도사

제 34 조 (교육전도사의 자격) 교육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고, ①과 ②,③ 중 한 가지 이상이 적용돼야 한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
- ② 학부 신학과 또는 기독교교육학과 2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 혹은 그와 동등한 학업 과정을 이수한 23세 이상 된 이
- ③ 신학대학원 (M.Div. 또는 Th.M. 3년 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

제 35 조 (교육전도사의 임면)

교육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인준하고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제 36 조 (교육전도사의 직무) 교육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 ② 당회, 임원회 회원이 된다.

- ③ 당회에 자신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3 절 평신도사역자

제 37 조 (평신도사역자의 자격) 평신도사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세례 받은 후 5년 이상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행정/관리 ... 등의 능력과 열심이 있거나, 다음 ②항의 자격을 보유한 이로 교회 또는 부속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이
- ② 교사/복지사/물리치료사/간호사/의사/소방안전관리자/전기기사 ... 등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이

제 38 조 (평신도사역자의 임면)

평신도사역자는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인준하고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제 39 조 (평신도사역자의 직무)

- ① 담임목사가 명하는 바에 따라 평신도사역을 한다.
- ② 당회에 자신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4 장 교역자

제 1 절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

제 40 조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자격>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고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으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춘 이
- ②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자격을 갖추고 과정 또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 증서를 받은 이

제 41 조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임명>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수련전도사(수련목)의 자격을 갖춘 이를 담임목사가 제청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구역회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전도사로 칭한다.
- ② 군목의 자격을 갖춘 이를 담임목사가 제청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구역회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군목후보 전도사로 칭한다.

제 42 조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직무> 수련전도사(수련목)/군목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련전도사(수련목)의 직무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 ② 군목은 입대하기 전까지는 수련전도사(수련목)와 동일한 수련을 하고 입대 후에는 군목의 직무를 담당하며 교회에서는 소속목사가 된다.

제 2 절 담임목사

제 43 조 (담임목사의 임면)

- ① 본 교회 담임목사는 기획위원회가 제청하여 구역회의 의결로 임면한다.
- ② 본 교회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교단, 기관이나 단체 등 어느 누구라도 본 교회 규약(정관)에서 정한 절차 없이 본 교회의 담임목사나 대표자를 임시 기간이라도 임면, 파송할 수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으며 본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 사임 등으로 궐위 된 경우도 같다.

제 44 조 (담임목사의 자격) 담임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석사학위(M.Div., M.A., M.M. 또는 Th.M.)를 취득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한 교단에서 안수 받은 이)
- ② 가급적 국제교류, 해외선교활동(선교지 및 선교사 관리 등)에 필요한 언어에 능한 이

제 45 조 (담임목사의 직무) 담임목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영적 지도자 : 담임목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① 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입교, 성찬, 혼례, 장례 등을 집행한다.
- ② 구역예배(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 ③ 교인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한다.
- ④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 ⑤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2. 행정 책임자 : 담임목사는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 시 규약(정관)을 해석하고 처리한다.
- ② 담임목사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 ③ 규약(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 ④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 ⑤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성명, 주소, 성명, 세례, 임원 피택, 혼례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3. 교회 회의의 주재 및 집행자 : 담임목사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구역회,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당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결의된 것을 집행한다.

제 46 조 (담임목사의 안식)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담임목사가 안식을 청원할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식하게 한다. 안식 중에도 책정된 사례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 47 조 (담임목사의 휴직)

건강/장기해외선교 ... 등의 사유로 본 교회 담임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일정기간 휴직을 청원할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휴직하게 할 수 있다. 휴직 중에도 책정된 사례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결의 하여 시행하되 가급적 휴직을 제한 한다.

제 48 조 (담임목사의 은퇴)

담임목사는 70세가 되면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은퇴를 확인하고 당회에서 원로목사가 됨을 공지한다.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 교단의 은퇴절차를 밟는다. 단, 65세가 넘었거나 30년 이상 목회한 담임목사는 명예(자원) 은퇴할 수 있다.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참조 >

제 49 조 (담임목사로 은퇴한 원로목사의 예우, 시무중인 담임목사 별세 시 사모에 대한 예우)

본 교회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는 퇴직 후 생활비로 시무중인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기본사례비의 50%를 별세 때까지 매월 또는 그에 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가 별세 할 경우 원로목사의 사모에게는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에게 지급되는 기본사례 생활비 50%를 별세 때까지 매월 또는 그에 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은퇴한 목사는 원로목사로 칭하며 당회,

임원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시무중인 담임목사 별세시 그 사모에게는 시무중인 담임목사 기본사례비 25%를 별세 때까지 매월 또는 그에 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 3 절 부담임목사

제 50 조 (부담임목사의 임면)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구역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어떤 경우에도(교회가 교단에 가입하여 특정교단에 소속되었거나 선교단체의 회원이 되어 있어도) 부담임목사의 임면에 관한 간섭은 받지 않는다. <제 76 조 (구역회 소집) 7항 참조>

제 51 조 (부담임목사의 자격) 부담임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부담임목사는 석사학위(M.Div., M.A., M.M. 또는 Th.M.)를 취득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한 교단에서 안수 받은 이)
- ②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사역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이

제 52 조 (부담임목사의 직무) 부담임목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사역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담임목사 유고시에는 담임목사가 지명하는 부담임목사가, 담임목사 궐위시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선출된 부담임목사가 담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66 조 (기획위원회의 직무), 제 76 조 (구역회 소집) 참조>

제 53 조 (부담임목사의 제한)

담임목사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부담임목사가 담임목사로 임면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역회에서 면직을 결의한 뒤에는 가하나 담임목사의 자격에 합당하여야 한다.

제 54 조 (부담임목사의 안식)

담임목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10년 이상 계속 시무한 부담임목사의 안식을 청원할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식하게 한다. 안식 중에는 책정된 사례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 55 조 (부담임목사의 휴직)

담임목사가 건강/장기해외선교 ... 등의 사유로 본 교회 부담임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임목사의 일정 기간 휴직을 청원하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휴직하게 한다. 휴직 중에는 책정된 사례비를 매월 지급해야 하며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되 가급적 휴직을 제한한다.

제 56 조 (부담임목사의 은퇴)

부담임목사는 70세가 되면 당회 준비위원회에서 은퇴를 확인하고 당회에서 원로목사됨을 공지한다.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교단의 은퇴절차를 밟는다. 단, 65세가 넘는 부담임목사와 30년 이상 목회한 부담임목사는 명예(자원) 은퇴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참조>

제 57 조 (부담임목사로 은퇴한 원로목사의 예우, 시무중인 부담임목사 별세 시 사모에 대한 예우)

본 교회 부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는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로 시무하는 부담임목사(들)의 평균사례비 50%를 매월 또는 그에 준하여 일시불로 별세 때까지 지급한다.(부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가 별세 할 경우 그 원로목사의 사모에게는 부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의 50%를 별세 때까지 매월 또는 그에 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부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한 목사는 원로목사로 칭하며 당회, 임원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시무중인 부담임목사 별세시 그 사모에게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부담임목사(들)의 평균 사례비 25%의 생활비를 별세 때까지 매월 또는 그에 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 4 절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 목사(소속목사 포함)

제 58 조 (특별사역 담당 목사의 임면)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 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기관목사, 군목, 선교사 등 교회 소속되어 활동하기를 원하는 목사의 교회소속에 대한 가부 및 이임은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59 조 (특별사역 담당 목사의 자격)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 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해당전문분야의 전문 과정 수료 또는 학위 취득을 한 이
- ②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목사는 소속 교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60 조 (특별사역 담당 목사의 직무)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 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사역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목사, 군목, 선교사 등 본 교회에 소속한 목사는 행정적으로 소속만 할 뿐이므로 특별한 직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 61 조 (특별사역 담당 목사의 제한)

교육, 음악, 선교 등 특별사역 담당 목사는 본 교회 담임목사로 임면될 수 없고 안식이나 휴직을 할 수 없으며 퇴직시한 및 퇴직금 지급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일반 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기관목사, 군목, 선교사

등 본 교회 소속 목사는 행정적으로 소속만 할 뿐이므로 '안식', '휴직', '퇴직', '퇴직금' 등에는 해당이 없으며 '구역회' 회원이 될 수는 없다.

제 5 장 회의 - 결의기관

본 교회 안에는 기획위원회, 구역회, 임원회, 당회 등의 의회를 둔다.

제 1 절 기획위원회

제 62 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부담임목사(기관목사 및 부분사역/파트타임 목사 제외)/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단, 7명이 안 될 때는 권사/집사 중에 부족한 수만큼 선출하여 최하 7명이 되게 한다. 권사/집사를 선출할 경우, 본 교회의 연합남/여선교회 회장을 우선적으로 당회에서 인준하여 세운다. 권사/집사의 기획위원회 임기는 1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제 63 조 (기획위원회의 소집) 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①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하되 기획위원 2/3이상의 서명(성명/생년월일/직분/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함)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정하여 모이되 기급적 정규예배(주일예배, 금요위십 등) 후에 모인다. 단 정규예배 후가 아닌 때 소집될 경우에는 2일 이전에 기획위원들에게 일자/시간/장소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연락하여야 한다.

제 64 조 (기획위원회 의장 및 서기)

- ① 기획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 ② 기획위원회 서기는 기획위원 중 기획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65 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기획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기획위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6 조 (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교회 상근직원 및 전도사의 임면에 대해 협의한다.
- ③ 제9조에 따른 교적명부 정리 및 당회 회부 - 다만, ‘대부분의 교인관리를 교역자들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담당 교역자들이 담임목사의 결재를 통해 정리해 두었다가 종합하여 보고하게 하고 확인 후 정기 당회에 넘긴다. <제 9조 (교인의 권리중지 및 퇴회/제명) 참조>
- ④ 신천장로 / 권사 / 집사 등 임원을 당회에 천거한다.
- ⑤ 구역회에서 위임할 경우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직무를 행사케 한다.
- ⑥ 교회 사역자, 전임봉사자의 근무연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2023년 현재 심방전도사 및 전임봉사자

는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한다.) - 퇴직한 이들 중에 건강이 허락되고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이를 택하여 '1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일하게 할 수도 있다.

⑦ 사직, 은퇴, 사망 등으로 담임목사 궐위시 부담임목사 중 담임목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52 조 (부담임목사의 직무), 제 76 조 (구역회 소집) 참조>

⑧ 재무부(팀)의 재정지출 중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출'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에서 처리하되 새롭게 발생하는 '1만 달러'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행사비와 비품구입 또는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해 지출되는 재정은 기획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시행케 한다. <제 98 조 (재무부의 직무) 참조>

⑨ 본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정규예배와 기도회 이외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를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한다. '기획위원회'가 허락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는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 7 조 (교인의 의무) 3항 참조>

⑩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규약(정관)에 언급된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한다.

⑪ 규약(정관)에 추가(신설)하여 넣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개정해야 할 내용이 생기면 심의하여 당회에 넘긴다.

⑫ 규약(정관)에 언급되지 않은 '교회에서 처리해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⑬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유행(예: 2020년 COVID-19 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획위원회 이상의 결의기관이 모일 수 없게 되면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결정권은 기획위원회로 위임된다. 기획위원회는 화상 회의를 인정한다.

⑭ 교회의 수입이 3개월 동안 30% 이하로 감소하면 재무부장은 기획위원회에 '긴축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이를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채택된 예산안과 관계없이 인건비 절감을 포함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중단, 혹은 축소할 수 있다. 단, 모든 결의는 기획위원회에서 한다. <제 98 조 (재무부의 직무) 참조>

⑮ 신임 담임목사를 뽑아야 할 경우 구역회에 후보를 천거한다.

제 2 절 임원회

제 67 조 (임원회의 조직)

임원회는 담임목사, 부담임목사(교회소속기관 또는 부서에서 일하는 목사 포함), 전도사, 교육전도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로 조직한다.

제 68 조 (임원회 소집)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규 임원회는 3월, 6월, 9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하고 12월은 '당회'로 대체한다.

② 임원회 일시는 담임목사가 정하되 1주일 이전에 지면(교회주보)에 광고하거나 정규예배 시간에 광고하여야 한다.

제 69 조 (임원회 의장) 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제 70 조 (임원회 정족수 및 의결)

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의 수로 하고, 결의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1 조 (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분기별 교회의 행정 및 부(팀)의 활동 보고 접수
- ②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당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심의
- ③ 기타

제 72 조 (임원회의 위임)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위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이 계속하여 모이기 어려운 경우 매년 11월~12월 중에 '정규 임원회'를 겸하여 모이는 「당회에 출석한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회의 모든 직무를 「기획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기간은 다음 해 '정규 임원회'를 겸하여 모이는 당회까지로 한다. <제 66 조 (기획위원회 직무) 참조>

제 3 절 구역회

제 73 조 (구역회의 조직)

구역회는 담임목사, 부담임목사(교회 소속기관 또는 부서에서 일하는 '특별사역목사'제외 - 파트타임 포함), 전도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연합남선교회 회장, 연합여선교회 회장, 청년회장, 당회 서기, 감사로 조직한다. 협동장로, 명예 장로, 명예 권사는 구역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 74 조 (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제 75 조 (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회에서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76 조 (구역회의 소집 및 직무) 구역회의 소집과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실행한다.

- ① 구역회는 매년 12월 ~ 1월에,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담임목사의 천거로 부담임목사의 임면에 관한 안건이 있을 경우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임시 구역회'는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가 소집하거나 구역회원 재적 1/3 이상이 서명(성명/생년월일/직분/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하고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면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 ② '사고 구역회'는 구역회 재적 위원 2/3 이상이 서명(성명/생년월일/직분/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하여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한 경우 담임목사는 '사고 구역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구역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사고 구역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담임목사는 2주 이내에 구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지면(교회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목사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목사의 강제 면직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 ⑥ 담임목사 이임에 관한 구역회와 사직, 은퇴, 사망 등으로 담임목사 궐위시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구역회는 부담임목사 중 기획위원회에서 선출된 ‘담임목사 직무대행’이 소집한다. <제 52 조 (부담임목사의 직무), 제 66조 (기획위원회의 직무) 참조>
- ⑦ 담임목사 및 부담임목사의 이임 및 청빙에 관해서는 교회가 소속한 교단이나 단체가 있더라도 그외의 규정, 규약(정관), 규범, 장정 등과 무관하게 교회 규약(정관)에 정한대로 한다. <제 43 조 (담임목사의 임면), 제 50 조 (부담임목사의 임면) 참조>
- ⑧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의 임면에 관한 것은 ‘구역회’ 이외의 어떤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
- ⑨ 당해 년도 수입, 지출에 결산에 관한 감사 및 재무부장의 보고를 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 ⑩ 구역회에서 당해 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이 승인된 후에는 재정 장부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단, 당회원 재적 1/3이상의 서명(성명/생년월일/직분/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을 받아 열람을 요청하고 정기 구역회 또는 임시 구역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보관된 지난 1년간의 장부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다. <제 98 조 (재무부의 직무) 참조>

제 77 조 (사무 처리 순서 및 의결 정족수 및 의결)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개회 예배
- ②서기 선택
- ③회원 점명
- ④보고 접수
- ⑤당해 년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접수
- ⑥신년도 수입 지출 예산 의결
- ⑦기타 사무처리
- ⑧폐회

구역회의 정족수는 서면 위임장 제출자 포함 구역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8 조 (의결 제척 사유)

목사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4 절 당회

당회는 본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9 조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 구성, 소집,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구성: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과 '교회 행정업무 담당자'도 참석하게 하여 준비를 돕게 한다.
- ② 소집: 담임목사는 정기당회 또는 임시당회 이전에 지면(교회주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③ 의장: 담임목사가 된다.
- ④ 서기: 기획위원회 서기
- ⑤ 의사정족수 및 의결: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⑥ 직무: - 당회원 명부와 복권과 퇴회/제명할 이를 조사 정리한다.
- 집사, 권사, 장로 후보를 당회에 천거한다.
- 담임목사가 천거한 부(팀) 조직(감사포함)을 확인하여 당회에 넘겨 인준 받아 일하게 한다.
- 규약(정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당회에 넘긴다.

제 80 조 (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 ①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입교인 중에 기획위원회가 확인하여 정리한 '당회원 명부'에 기재되어 당회에 넘겨진 이들. <제 7 조 (교인의 의무), 제 8 조 (교인의 권리) 참조>
- ② 담임목사, 부담임목사(소속기관 또는 부서에서 일하는 목사 포함), 전도사

제 81 조 (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제 82 조 (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 ② 임시당회는 담임목사가 필요에 의해 소집하거나, 당회원 1/3이상이 서명(성명/생년월일/직분/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하여 소집 요구를 하면 담임목사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소집한다.
- ③ 당회 일시와 장소는 담임목사가 정하되 2주일 전에 지면(교회주보)에 광고하여야 한다.

제 83 조 (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제 84 조 (당회 의장의 직무)

담임목사는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일반적인 회의법에 따라 진행한다.

제 85 조 (당회 서기 선출)

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제 86 조 (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교역자를 도와 당회원 명부와 세례식 거행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 87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획위원회에서 18세 이상 된 입교인 중에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 지 1년이 넘고 교인된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입교인'인지 확인 정리하여 당회에 넘겨진 자라야 당회원으로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 조 (교인의 의무), 제 8 조 (교인의 권리) 참조>

제 88 조 (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 본 교회 등록하고 출석한 지 1년 미만인 이
- ② 이명절차를 마친 지 1년 미만인 장로
-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이 <제 7 조 (교인의 의무) 참조>

제 89 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 ①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의 수'로 하고 결의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가. 표결은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가급적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 나. 별도로 표결 방법이 규정된 것 이외의 것은 사안에 따라 기명, 무기명 등 표결 방법을 회의 중에 정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당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회원점명 직전까지 '성명/생년월일/직분/연락처를 명시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한 회원으로 인정한다.
- ③ 교인의 입회와 퇴회/제명 그리고 제명된 이의 복권은 당회에 출석한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퇴회/제명된 교인은 퇴회/제명된 지 1년이 지난 후 재등록할 수 있으며, 기획위원회와 당회의 각각 2/3 찬성 결의를 통해 당회원으로 회복할 수 있다.
- ④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서의 탈퇴, 소속교단 탈퇴 후 새로운 교단 가입, 독립교회로의 전환, 교회분리개척, 교회 건물 매각, 본 교회 규약(정관) 개정은 재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서면위임장 포함) 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⑤ 사전에 후보에 공지하여 주일 1, 2, 3부 예배 후 동일한 내용의 당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통합 처리할 수 있고, 장소가 협소할 경우 당회원은 대예배실 외에도 교회 내에 영상과 음성이 연결된 다른 장소에서도 당회 참석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 90 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당회는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로부터 넘겨진 당회원 명부를 확인한다.
-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 ③ 당회는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이 중에서 집사, 권사 등을 선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감사를 포함한 부(팀) 조직을 인준한다. (신천 집사, 권사의 임명은 자격 및 품행에 대한 교육 및 고사를 거친 후 증서를 수여한다)
- ④ 당회는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 ⑥ 당회는 속회 조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속회에 소속된 임원중에서 속장(혹은 속회 강사와, 심방자 중 1명)을 임명하되 별도의 지면으로 발표하거나 임명 순서를 가질 수도 있다.
- ⑦ 당회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필요한 훈련을 받은 이’를 일정 기간 평신도 선교사로 타교회 또는 선교지에 파송 할 수 있다.
- ⑧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입회와 퇴회/제명할 이로 넘겨온 명부를 확인하고 입회와 퇴회/제명을 의결한다. 퇴회/제명된 지 1년이 넘은 이는 교회에 재등록 절차 및 기획위원회와 당회 결의를 통해 복권될 수 있다. <89조 ③항과 대조>
- ⑨ 당회는 담임목사가 목회 협력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또는 부(팀)의 조직을 요청할 경우 조직하여 둘 수 있다.
- ⑩ 당회는 교회규약(정관)을 제정하고 규약(정관)이 제정된 후에는 ‘기획위원회에서 개정 또는 추가(신설)을 요청하여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넘겨올 경우’에 한하여 개정 및 추가(신설) 한다.
- ⑪ 당회는 본교회의 규약(정관) 제정 · 개정을 의결한다.

제 91 조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개회예배 (정규예배 후에 모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서기 선택
- ③ 당회원명부 확인 및 회원점명 (당해 년도 퇴회/제적된 교인명부 확인)
- ④ 교회 연혁 정리
- ⑤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 선교회(전도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
- ⑥ 교회규약(정관) 개정 또는 추가(신설) -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넘겨온 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 ⑦ 시무중인 집사/권사 연임의결
- ⑧ 임원 선출
- ⑨ 기관장 인준(각 남녀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 ⑩ 각 부서(팀) 및 특별위원회 조직(감사포함) 인준
- ⑪ 기타 사무처리(공로/감사패 전달, 당회에 참석한 임원들이 임원회 위임 결의)
- ⑫ 폐회

제 6 장 부(팀)

제 92 조 (부서-팀-의 구성)

본 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이념과 신년목회계획에 따라 부서(팀)를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조직하고 당회에서 결의하여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매년 교회의 변화 그리고 담임목사의 목회 이념과 신년목회계획에 따라서 부서(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 1. 교육부(팀) 2. 관리부(팀) 3. 재무부(팀)… 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기타 조직되는 별도의 부(팀)는 기존의 부(팀)의 규정에 준하여 조직 운영한다.

제 1 절 교육부(팀)

제 93 조 (교육부(팀)의 조직) 교육부(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하여 당회에서 인준된 이들로 조직한다.

제 94 조 (교육부의 직무) 교육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를 도와서 기독교교육과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 ②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인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③ 교회학교의 조직, 교육정책, 교육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④ 교육부(팀)장은 교회학교 조직, 정책, 계획, 운영실태 … 등 전반에 대해 당회에 보고한다.

제 2 절 관리부(팀)

제 95 조 (관리부(팀)의 조직) 관리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하여 당회에서 인준된 이들로 조직한다.

제 96 조 (관리부(팀)의 직무)

관리부(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특히 관리부는 교회 재산관리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직무수행은 정확한 문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①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 ②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 그리고 교회비품을 수리하고 보존한다.
- ③ 교회의 비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모품정도의 규모가 작은 것은 관리부(팀)장이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규모가 큰 것은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④ 관리부(팀)장은 기획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부동산의 구입, 매매, 차입, 설정, 임대차 등의 일에 참여한다.

- ⑤ 관리부(팀)장은 교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황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 상태를 당회에 보고한다.
- ⑥ 교회에서 보존 관리 중에 있는 건물과 비품 중 특별히 관리해야 할 건물과 비품은 재무부와 협의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 3 절 재무부(팀)

제 97 조 (재무부(팀)의 조직) 재무부(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천거하여 당회에서 인준된 이들로 조직한다.

제 98 조 (재무부(팀)의 직무) 재무부(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목사의 목회 이념과 목회계획에 따라 교회의 당해년도 수입 지출 결산서와 연간 수입 지출 예산안을 작성한다.
- ② 교회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되 1회용 또는 기간이 정해진 현금 봉투는 사용 후 1년,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서류는 3년간 보관하고 폐기한다. 단,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보관이 필요한 영수증 및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및 서류의 시효기간 동안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 ③ 전임 교역자와 교회 상근(유급) 봉사자 그리고 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한 원로목사에게 생활에 필요한 사례를 지급한다. <제 49조, 제 57조 참조>
- ④ 전임 교역자와 교회 상근(유급) 봉사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정산 할 수도 있다.
- ⑤ 담임목사의 주택 구입 또는 임대비용을 부담한다.
- ⑥ 교회가 교단에 소속하고 있을 경우 교단 소속에 필요한 의무금(부담금)을 납부한다.
- ⑦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한다.
- ⑧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담임목사의 결재에 의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출’이외의 지출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규약(정관)에 언급되지 않은 일이나 ‘1만 달러’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행사비와 비품구입 또는 부동산매입 … 등은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66 조 (기획위원회 직무) 참조>
- ⑨ 예산전용 또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각 부(팀)장의 확인과 담임목사의 결재로 시행한다.
- ⑩ 지출 후 처리
 - ㉑ 각 부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부서(기관)장의 책임 하에 시행 및 관리하게 한다.
 - ㉒ 미자립교회 후원(지원)금, 교회 내 특별부서 및 교회운영 기관 지원(후원)금, 해외선교비(파송 및 후원선교사 지원, 선교지 교회 및 선교시설 건축 및 보수, 교육시설 건축 및 보수, 아동후원 및 장학금 … 등 해외선교를 위한 경비 일체), 목회비(목회활동비), 경조비, 구제비, 장학비, 접대비, 부담금, 광고홍보비, 기여금, 지원(후원)금 … 등의 지출은 송금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종결처리 한다.
 - ㉓ 특별집회 및 행사 사례비(초청강사 및 수고자 사례 … 등)는 송금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종결처리 한다.

㉔ 전임 교역자와 교회 상근 봉사자 사례비(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포함), 교육(연수)비, 교통비(차량 주유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보험료 등), 자녀교육비(고교 및 대학생) … 등의 지출은 송금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종결처리 한다.

㉕ 출장비: 장소,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비행기요금, 차량이용비(택시 및 렌트카), 식사비, 호텔비,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한 현지 활동비 … 등의 ‘여비’를 - 재무부에서 정하여(담임목사, 부교역자, 교회상근봉사자, 일반 성도 중에 출장을 가는 개인 또는 부부에게 업무범위 및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송금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종결처리 한다.

㉖ 심방비: 교역자들의 정규 또는 비정규 심방시 숙회헌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되 송금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종결처리 한다.

㉗ 도서연구비 : 목회자의 설교준비를 위한 도서구입 및 기타연구를 위한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되 송금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종결처리 한다.

㉘ 교인의 개인별 현금내역정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어 자신의 현금내역조회를 요청할 경우 담임목사의 승낙을 받아 본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㉙ 재무부장은 교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주 담임목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구역회에 연간 결산 및 예산을 보고한다. 구역회에서 당해 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이 승인된 후에는 재정 장부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단, 당회원 재적 1/3이상의 서명(성명/생년월일/직분/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을 받아 열람을 요청하고 정기 구역회 또는 임시 구역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보관된 지난 1년간의 장부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다. <제 76 조 (구역회의 소집 및 직무) 참조>

㉚ 교회의 수입이 3개월 동안 30% 이하로 감소하면 재무부장은 기획위원회에 ‘긴축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이를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채택된 예산안과 관계없이 인건비 절감을 포함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중단, 혹은 축소할 수 있다. 단, 모든 결의는 기획위원회에서 한다. <제 66 조 (기획위원회 직무) 참조>

제 99 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00 조 (교회명의를 카드(Corporate)사용)

교회명의 카드(Corporate)는 담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은 이만 사용하고 재무부에서 내역을 정리한다.

제 101 조 (감사의 선출)

재무부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 교회 각 부(팀) 및 선교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담임목사가 천거한 이를 심사하여 2명을 정하고 당회에서 인준 받아 일하게 한다.

제 102 조 (감사의 자격) 감사는 재무부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가급적 기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기획위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경우에는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10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재무부의 회계 및 행정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교회 대표자 및 재산 관리

제 104 조 (대표자)

- ① 본 교회의 모든 의회 <기획위원회, 구역회,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당회, 임원회> 등의 회장과 교회의 전반 업무처리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있어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 ② 본 교회 각 부(팀)의 대표자(장)로 일하며 맡게 되는 모든 직책과 그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표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종결된다.

제 105 조 (재산의 구분 및 재산관리위원회)

- ① 본 교회의 재산(총유재산)은 교인들의 현금과 그 현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 목적사업을 통한 이익금과 기본재산의 이익금으로 한다.
- ② 본 교회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과 보통재산(동산)으로 구분하고 부동산의 구입, 매매, 차입, 설정, 임대차 등의 일을 기획위원회에서 구성한 <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대표자가 되어 일체의 직무를 행사한다.

제 106 조 (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본 교회 재산관리위원회는 재산(부동산)의 매매, 차입, 설정, 임대차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담임목사 1명, 시무장으로 중 '관리부(팀)장'과 '재무부(팀)장'을 포함한 3명 - 단 관리부(팀)장, 재무부(팀)장이 장로가 아닐 경우는 권사 중에서 택하여 합 5명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일하게 하고 그 일이 마감되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동 해산한다.

제 107 조 (대리인 위임)

본 교회 재산(부동산) 매매, 차입, 설정, 임대차 ... 등의 행정처리 또는 교회 재산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지역 협의체(조합, 위원회 ... 등)의 참석 등을 위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시무장으로 중 대리인을 선출하여 '정하여 위임한 일'을 처리하게 한다. 단, 선출된 대리인은 위임받은 모든 일을 대표자(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기획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재산의 명의)

본 교회에서 취득한 재산은 <뉴욕기독교교회>명의로 등기한다. 특별한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담임목사의 명의로 명의신탁 할 수도 있다. 본 교회의 각 부서 예금통장은 '뉴욕기독교교회'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제 109 조 (재산권) 교회가 소유한 재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 ① 교회분리(개척)은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② 퇴회/제적된 교인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이 없다.
- ③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 상태의 교인도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이 없다.
<제 9 조(교인의 권리중지 및 퇴회) 참조 >
- ④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 구입시 보증이나 기타 책임권자가 된 교인이 보증의 문제로 금전적, 법적

책임이 따를 상황이 생길시 보증인의 신변이나 재산에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10 조 <규약(정관) 제정, 개정 및 추가(신설)의 효력>

본 교회의 규약(정관) 제정 및 개정된 것은 당회가 닫힌 후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12월 10일 (주일)

담임목사 : 고 성 민



당회서기 : 이 임 협



<규약(정관) '제정' 및 '개정' 연혁>

1. 2019년 11월 24일 뉴욕기독교교회(당시, 뉴욕열방교회) 규약(정관)을 개정하다.
2. 2020년 12월 4일 뉴욕기독교교회 규약(정관)을 개정하다.
3. 2023년 12월 10일 뉴욕기독교교회 규약(정관)을 개정하다.